

전주지방법원 2022. 1. 11 선고 2021가단718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 론 종 결 2021. 12. 7.

판 결 선 고 2022. 1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통기소 1983. 11. 10. 접수 제184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별지 피고별 지분내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3. 11. 11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아버지인 J는 1983. 11. 10. K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83. 11. 10. 접수 제18415호로 채권최고액 600,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나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. 1. 7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별지 피고별 지분내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. 3. 18. 피고들 명의로 1984. 7. 9.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J가 K으로부터 도박으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또한 원고는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 역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다. 한편,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1983. 11. 10.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. 11. 11. 시효로 소멸하였다.

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별지 피고별 지분내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3. 11. 11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재광

1) 위와 같이 선해한다.